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2. 10 선고 2015가합582764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A 주식회사

피고 겸 피고3.의 보조참가인

2. B

피고3. C

변론 종결2017. 2. 10.

판결 선고2017. 2. 10.

## 주 문

1. 피고 A 주식회사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,560,597원 및 그중 302,771,699원에 대하여 2015. 11. 25.부터 2016. 4. 28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. 7. 29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5. 7. 29. 접수 제308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#### 가. 신용보증약정의 체결

1) 원고는 2014. 10. 23. 피고 A 주식회사(이하 '피고 A'이라 한다)와 사이에,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(이하 '우리은행'이라 한다)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이에 따라 같은 날 우리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. 피고 A은 2014. 10. 30. 이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5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(이하 '이 사건 대출'이라 한다).

|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2014. 10. 23. | D | 297,500,000원 | 2015. 10. 22. | 350,000,000원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
2)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,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,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,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·이전·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, ③ 미납한 보증료, 지연보증료,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.

3)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%이다.

4)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#### 나. 원고의 대위변제

피고 A이 2015. 8. 18. 이자연체로 인하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. 11. 25. 우리은행에 302,771,699원을 변제하였다. 한편,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약금 채권 564,840원, 대지급금 채권 1,224,058원이 발생하였다.

#### **다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**

피고 B은 2015. 7. 29. 피고 C에게 본인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5. 7. 29.자 매매예약(이하 '이 사건 매매예약'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(이하 '이 사건 가등기'라 한다)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

- 피고 A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, 3항)
- 나머지 피고들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**2. 피고 A, B에 대한 청구**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04,560,597원(=대위변제금 302,771,699원 + 위약금 564,840원 + 대지급금 1,224,058원) 및 그중 위 대위변제금 302,771,6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. 11. 25.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의 최종 송달일인 2016. 4. 28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**3. 피고 C에 대한 청구**

#### **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**

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14503 판결 등

참조).

2) 살피건대,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,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, 위 매매예약체결일로부터 불과 20일 후인 2015. 8. 18.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이에 원고가 2015. 11. 25. 우리은행에 신용보증 대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## 나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1)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,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, 무자력의 정도,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,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,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).

2)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든 각 증거,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,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으므로, 피고 B은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.

### 가) 적극재산

|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 | 이 사건 부동산       | 34,507,200원  |
| 2  | E 106-1701 아파트 | 782,000,000원 |
| 합계 | 816,507,200원   |              |

## 나) 소극재산

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1    | 이 사건 구상금채무     | 원고    | 304,560,597원 |
| 2    | 일반채무           | 우리은행  | 80,000,000원  |
| 3    | 일반채무           | 우리캐피탈 | 49,654,000원  |
| 4    | 근저당권부 채무       | 우리은행  | 126,400,000원 |
| 우리은행 | 538,600,000원   |       |              |
| 합계   | 1,099,214,597원 |       |              |

3)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,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피고 B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,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.

### 다. 피고 C의 선의 여부

피고 C의 보조참가인인 피고 B은,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피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.

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,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,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, 피고 B과 피고 C의 관계,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, 피고 C의 보조참가인인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 C의 보조참가인인

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**라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**

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# **4. 결론**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판사김한성**

**판사이상률**

**판사리아영**

**별지**